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7 민사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79519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조병룡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20. 4. 1.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C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결혼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원고 회사에 2014. 1. 28.경 입사하여 2016. 4. 4.경 퇴사 후, 2018. 10. 4.경 다시 입사하여 매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합의서 및 경업금지서약서 작성

1) 원고는 2018. 12.경 피고와 사이에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금지행위)

- ① 피고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고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본다.
4. 원고의 회사를 퇴사 후 3년간 원고와 동종업계에 종사하거나 동종의 사업장을 설립하는 행위

2) 원고는 2018. 12. 22.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종사)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일 금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8. 2. 12.경부터 D회사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018. 9. 19.부터 1년간 위 업체에 대해 휴업신고를 하였고, 2019. 12. 9.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5.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2020. 4.경 결혼상담 및 정보제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20. 7. 31.경 C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 C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작성한 서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서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위와 같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부제소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과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던 E이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서약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한 점, 위 서약서에는 원고 회사에서 습득한 회원정보 등을 동종의 경쟁업체에 유출이나 누설하지 않고, 서약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경업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원고는 서약서를 성실히 이행하며 준수하는 이상 퇴사자(E)를 대상으로 경업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퇴사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퇴사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 제기 여부에 관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서약서(을 제12호증)에 준수사항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부제소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경업금지약정에 반해 2019. 9. 19.부터 2019. 12. 9.까지 원고와 동종의 결혼중개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100만 원(= 81일 ×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및 경업금지약정에 반해 퇴사 후 3년이 도과하기 전 원고와 동종 회사인 C에 입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C에서 입사한 때로부터 퇴사할 때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D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8. 9. 휴업신고를 한 이후 2019. 12.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D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침해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위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

4. 판단

가. D회사 운영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8. 2. 12.경부터 D회사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원고 회사에 재입사 하기 이전인 2018. 9. 19.부터 1년간 위 업체에 대해 휴업신고를 한 점(휴업신고 기간 2018. 9. 19. ~ 2019. 9. 18.),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신고를 한 이후 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12. 9. 폐업신고를 한 점, 관련 법령에 의하면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2항),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D회사에 대해 1년간 재개신고를 하지 않아 폐업한 것으로 간주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9. 9. 18.부터 2019. 12. 9.까지 실질적으로 위 업체의 영업을 재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및 경업금지약정에 반하여 동종 업체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 입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참조].



2)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반해 원고에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회원들의 개인정보, 연결관리 시스템, 영업 노하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 중 회원들의 정보는 인트라넷에 저장되어 피고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제10조에서 비밀 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고 피고가 업무상 취득한 회사와 고객의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는 경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업금지약정 체결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 외에도 다수의 결혼정보업체가 영업 중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회원관리 전산시스템(갑 제13호증)의 기재와 같이 회원 가입 시 회원의 직업, 건강상태, 가족사항, 희망상대의 직업, 연수입, 신장, 학력, 연령, 종교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남녀회원을 대상으로 서로 원하는 조건의 이성 회원을 검색하여 프로필을 소개한 후 회원 상호 간에 만남 의사를 타진한 후 만남을 희망할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¹⁾

1) 이 사건 소장 제2면 참조



결혼을 중개 및 알선하는 것은 동종업계 전반에 일반적인 영업 방식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동종 회사에 없는 독자적인 연결관리 시스템 등 업무 노하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게 퇴사 이후 3년 동안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동종업계에서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장기간 동종업계로의 근무 금지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라) 피고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경업금지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1만 원에 불과하다(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1일 당 100만 원에 이른다).

마) 사용자인 원고와 피용자인 피고 사이에 현실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피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사전에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²⁾.

바)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모든 미혼 남녀가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원고의 회원을 제외하고도 피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 원고의 회원과 겹칠 가

2)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E도 원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유사한 내용의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데이터베이스(회원명단) 사용에 협조를 잘 해줄 것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회원유치 업무에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적이므로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자신이 입사할 당시에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매니저들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경쟁 업체로의 이직을 금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조용희

 판사 남민영